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2024. 2. 2.(금)

심사보고서

안 건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소방본부
- 2.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u>2024년 1월 15일</u>, 박순범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2024년 1월 17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1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3.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설명자: 박순범 의원
 - 나. 제안이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 지식·경험 부족과 소방안전 관리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소방훈련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소방훈련·교육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원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O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O 소방훈련·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방훈련시설 활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O 효과적인 소방훈련·교육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 근거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남기호)

가. 조례제정 목적

○ 화재 등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 안전관리대상물¹⁾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대상물 범위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1급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대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급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3) ^1이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안 제4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1. 소방훈련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 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 3.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 4.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안 제6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시되는 훈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²⁾을 활용 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소방훈련·교육·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관계인이 소방 훈련·교육 실시 결과의 시스템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안 제8조, 안 제9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와 관계인의 참가 요청 및 그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 관계인의 초기대응과 훈련·교육에 대한 의지가 다소 미흡하고 관계법령³)에 따라 소방훈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²⁾ 소방훈련시설(소방서, 안전체험시설, 소방학교 등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 특히 재난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안전확보가 지연되어 피해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어 재난현장 에서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고, 자 율적인 재난 안전관리 능력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체계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제정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대상시설을 철저히 조사 및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인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임.

대상	관련 법령	화재안전 훈련.교육			
네o	근건 납청	실시자	대상	주기	과태료
다중이용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유자,관리자 점유자		연1회이상	200만원이하
특정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인	상시근무, 거주자	연1회이상	300만원이하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관	업주,종업원	2년1회이상	300만원이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유자,관리자	상시근무, 거주자	연1회이상	300만원이하
소방대원, 화재취약자	소방기본법	소방기관	관계인	2년마다1회	-

참고 1 경북도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소방본부

계	포북	포남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24,622	2,022	2,094	3,129	1,138	1,286	3,938	811	1,218	623	661
경산	의성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2,513	559	237	298	344	506	642	1,655	318	162	468

참고 2 경북도내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대상현황 소방본부

○ 2021년 : 총 2,028개 대상 / 전체 대상의 약 8.2%

○ 2022년 : 총 1,726개 대상 / 전체 대상의 약 7.0%

○ 2023년 : 총 2,887개 대상 / 전체 대상의 약 11.7%

관서	소방안전관리	훈련 및 교육 지원 실적							
	총 대상수	계	2021	2022	2023				
계	24,622	5,321	2,028	1,726	2,422				
포북	2,022	265	108	56	193				
포남	2,094	396	211	67	155				
경주	3,129	305	100	85	197				
김천	1,138	345	144	121	167				
안동	1,286	347	147	118	251				
구미	3,938	316	77	62	218				
영주	811	277	108	96	114				
영천	1,218	234	90	77	57				
상주	623	232	45	88	110				
문경	661	93	21	37	45				
경산	2,513	539	212	192	226				
의성	559	308	142	84	89				
청송	237	82		24	76				
영덕	298	131	64	51	67				
청도	344	180	87	68	36				
고령	506	49	31	10	31				
성주	642	420	189	174	88				
칠곡	1,655	464	183	177	148				
예천	318	133	32	56	62				
봉화	162	73		27	48				
울진	468	132	37	56	44				

참고 3 소방훈련 경진대회 현황(2021~2023) 소방본부

- 경북소방본부 주관 2022년도부터 관계인 소방경진 대회 개최
 - 기간 : 2022. 5월 ~ 12월 / 8개월
 - 참가 : 1,155개소(냉동물류창고 843, 요양병원 115, 전통시장 197)
 - 시상 : 4개소(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 경북소방본부 주관 2023년도부터 관계인 소방경진 대회 개최
 - 기가 : 2022. 4월 ~ 12월 / 9개월
 - 참가 : 709개소(유치원 371, 의료 231, 판매 107)
 - 시상 : 4개소(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 ※ 1위 포항 동촌어린이집, 2위 구미 롯데마트 구미점, 3위 영덕 샛별노인요양원, 4위 안동 건양요양병원
- ※ 기타(소방청 협조사항)
 - 관련근거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7971(2022.11.4.)호
 -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훈련·교육 지원관련
 - 조례 제·개정 협조에 대하여 전국 시·도에 시달

-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